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최승혁 김범준 김시엽†
고려대학교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 상식을 제시하고 양형기준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들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양형판단과 양형판단의 기본적 지침이 되는 처벌철학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대학생 157명(남자 61명, 여자 96명)에게 고위기업간부의 사기, 횡령,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과 일반인의 강도, 절도에 관한 범죄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년 이상의 법정형에 맞게 설정된 사기,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범죄와 강도 범죄는 서로 간에 양형판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도범죄보다 더 긴 형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기, 횡령 같은 범죄에는 강도 범죄와 같은 무력화 철학이, 뇌물수수 범죄에는 절도 범죄와 같은 응보 철학이 양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가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99명(남자 53명, 여자 46명)에게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조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게 설정한 조건과 낮게 설정한 조건 간 양형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집단 모두에서 양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연구 1에서와 같이 무력화 철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일반인들은 입법자나 법원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 차이로 인해 편향되어 나타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국민의 상식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고자 출범한 양형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철학, 양형판단, 양형기준, 사회적 지위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법원의 양형결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판사 개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바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

관예우’ 등의 부정적인 논란이며,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 사법불신의 풍조가 만연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문성우, 2007). 대표적으로,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괴리감을 조성해온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의 중견간부 이상에 해당하는 이른 바 화이트칼라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 본 논문의 연구 1에 보고된 자료는 최승혁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이다.

† 교신저자 : 김시엽,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443-76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Tel: 031-249-9194, E-mail: mind@kyonggi.ac.kr

이러한 사법불신 감정의 바탕이 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최근 참여연대(2006)와 경제개혁연대(2007a) 등 민간단체들과 양형위원회(2007)는 법원의 선고결과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며, 또한 정치관료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적 무감각, 상대적 박탈감 등을 조장하는 등 통상적인 범죄 이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일반 재산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판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범죄들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범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통상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비교 대상 집단이 되는 절도, 강도와 같은 일반범죄와의 비교를 통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판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판단에 대한 연구들과 범죄의 처벌 철학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양형기준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연구로서, 양형기준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판단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유형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용어는 1939년 Sutherland가 미국사회학회 회장취임 연설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오늘날 이 용어는 많은 사회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이태원, 1998). 전통

적으로 범죄학 연구는 하위계층에서 저질러지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상해 등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들을 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이들 범죄 유형에 연구가 집중되었었는데, 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더 위험한 범죄로서 더 많은 죽음이나 상해, 그리고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런 상위계층의 범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Sutherland, 1940; 1945; 1983).

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지 않은 이른바 살인이나, 폭행, 강도, 강간 등은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니며, 또한 암흑가의 부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하여 저지르는 신용사기같은 범죄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Sutherland, 1940; 1983).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개념은 Sutherland의 정의 이후에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 보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높은 사회적 지위인가에 대한 개념상 모호함을 가져왔고,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범위가 기업인의 사기나 횡령, 배임으로부터 정부관료의 뇌물수수까지 너무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이태원, 1998; 최인섭, 최영신, 1996).

예를 들어, Lemert(1972: 최영인, 염건령, 2005에서 재인용)는 Sutherland가 제시한 화이트칼라 범죄 정의의 오류를 지적했는데, 그는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사무직원과 관리직 이상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나누어 화이트칼라 범죄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화이트칼라 계층과 블루칼라 계층의 명확한 개념 구분을 통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구분하고자 했다. 그는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원이 자주 저지르게 되는 사기나 횡령, 뇌물수수, 불법이익공여, 세금탈세, 회계부정 등과 같은 비 폭력적, 비 물리적 범죄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로 보았고, 이에 반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저

지르는 살인, 폭력, 방화 등 물리적 위해가 포함되는 범죄행위를 블루칼라범죄로 보았다. 그러나 Lemert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범위를 하위 사무·관리직으로까지 너무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범위를 Sutherland보다 더욱 더 광범위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영인, 염건령, 2005).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에 대한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Sutherland의 정의를 따르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Sutherland의 정의는 범죄행동의 원인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빈곤이나 빈곤과 관련된 사회적, 개인적 병리현상 때문이라는 기존 범죄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류계층의 범죄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현대 범죄학 이론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여 저지르는 즉, 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화이트칼라 범죄의 문제의식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Lemert의 제안을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의 범위를 하위 사무·관리직으로까지 확대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큰 해를 입히는 상류계층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Sutherland의 정의는 오늘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연구의 기본적 공식으로 인정받고 있다(이태원, 1998; 최영인, 염건령, 2005; 최인섭, 최영신,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를 크게는 Sutherland의 정의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Sutherland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고위 관리직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자신의 직업상의 신분과 지위를 활용한 비폭력적 고지능적인 사기, 횡령, 뇌물수수 범죄를 본 연구의 화이트칼라 범죄 대상으로 하였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앞서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화이트칼라 범죄 행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여 저지르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기업체 직원의 횡령이나 공무원의 뇌물수수, 대기업의 가격 담합, 국가의 인권유린 범죄각 개별사건에서 바라보면, 범죄의 동기나 원인, 범죄 행위주체의 성격, 범죄가 끼치는 사회적영향, 범죄에 대한 사회적대응 방식 범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장홍근, 1998) 보이 이러한 여러 화이트칼라 범죄들을 한 연구에서 모반죄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분석의 목적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연방수사국과 미국 범죄학회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횡령, 사기, 위조 등 가장 전형적인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는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 of Theft)와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증 등의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 범죄(Crime against Public Administration), 그리고 행정규제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범죄, 노동력 착취와 같은 노동범죄, 불공정거래 등 경제활동이나 경제적 거래, 기타 상거래 등과 관련된 경제적 화이트칼라 범죄(Regulatory Offence)로 나누고 있다(최영인, 염건령, 2005).

또한, Coleman(1985: 최인섭, 최영신, 1996에서 재인용)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죄자의 범죄동기의 차이에 따라 직업적 범죄(occupational crime)와 조직체 범죄(organizational crime)로 나누고 있는데, 직업적 범죄는 개인들이 그들의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사기,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직체 범죄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범죄로 허위광고, 사기 판매, 탈세, 가격 담합, 불안정한 생산물의 제조, 전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Coleman의 분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거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조직체 범죄의 분류 안에 기업에 의한 범죄는 물론, 국가조직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밖에도 화이트칼라범죄는 '상층세계의 범죄', '경제범죄', '권력자들에 의한 범죄', '사무실에서의 범죄', '직업범죄', '엘리트 범죄', '조직범죄' 또는 '기업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태원, 1998). 이러한 여러 분류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Coleman의 분류방식과 같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직업적 범죄와 조직체 범죄로 나눌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개혁연대(2007b)의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 사유 분석에 의하면 법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그 사유로서 판단하는 것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양형판단과 일반인의 양형판단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의 분류를 범죄자의 범죄 동기의 차이에 따라 직업적 범죄(occupational crime)와 조직체 범죄(organizational crime)로 하고, 그 중 범죄자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직업적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징을 다룬 연구들이 있고(문성식, 2003; 신진영, 2007; 오택립, 2006; 이천현, 2002; 이철, 2005; 이태원, 1998; 장흥근, 1993; 최영인, 염건령, 2005; 최인섭, 최영신, 1996; 최한수, 2007),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나 양형원인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경제개혁연대, 2007a; 2007b; 2007c; 김성규, 1993; 손철우, 2007; 양형위원회, 2007; 오영근, 이상용, 1996; 이승준, 2006; 이주형, 2007; 참여연대, 2006). 이 중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실태나 양형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그리고 입법자의 처벌목적이나 법정형에 비해 너무 관대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문제제기한 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들 중 대표적인 연구들 몇몇을 소개하기로 한다.

오영근과 이상용(1996)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한 형태인 수뢰죄의 양형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장 차관급의 최고위직에서부터 9급의 최하위직까지 평균 수뢰액은 2천여만원이었고, 이들에 대한 1심판결 결과는 평균 18개월의 징역형이었다. 이들 중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 73%였다. 항소심에서는 집행

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약 79% 정도로 1심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죄의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액수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¹⁾.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뇌물죄 처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입법자는 형벌의 목적 중 일반예방적 관점을 취하고 위하적(威嚇的) 사고에서 뇌물죄에 대해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뇌물죄의 실제 사법처리과정에서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되기 때문에 재범위험이 없다는 특별예방적 고려에서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뇌물죄 처벌에 대한 입법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개혁연대(2007a)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상의 5억원 이상 배임, 횡령을 저지른 기업의 지배주주와 이사 및 집행임원 중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들의 피고인 150명에 대한 법원의 양형분석을 내 놓았다. 이들 특경가법 상 배임, 횡령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일 정도로 중한 범죄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들 사건의 집행유예판결이 83% 이상으로 형법상의 강·절도죄의 집행유예율에 비해 약 23~29%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법정형 상 더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특경가법 상의 횡령, 배임이 법정형이 3년 이상인 강도나 6년 이하인 절도보다 집행유예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는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대한 근거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형위원회(2007)에서는 2004년 3월부

1) 200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터 2006년 말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돼 확정된 사건 중 4만 3천여 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 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법원이 강력범죄의 피고인들에 비해 뇌물, 배임,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 피고인들의 구속비율이 낮고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원이 특히 일반 범죄에 비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더욱 관대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가 일반 범죄보다 그 피해의 규모가 크고 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매우 관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하고 비일관적인 선고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목적에 맞게 양형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범죄의 처벌철학에 관한 선행연구

범죄자를 처벌하는 철학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어떠한 처벌철학을 바탕으로 양형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경중의 기본적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인식 아래 국내외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에 관한 연구들은 법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재홍, 1991, 1995a, 1995b; 김범준, 2007; 김범준, 최승혁, 2008; 박은영, 2007; 손철우, 2008; 이재상, 1994; 이천현, 2007; 최훈석, 박은영, 2008; 황인정, 2007; Carlsmith, 2006; Carlsmith, Darley, Robinson, 2002; Carroll, Perkwitz, Lurigio, & Weaver, 1987; Darley, Carlsmith, & Robinson, 2000; McFatter, 1978, 1982; Reyna & Weiner, 2001; Streng, 1994; Weiner, Graham, & Reyna, 1997).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형벌이론에 기초하여 처벌의 목적을 크게 응보주의(retribution)와 공리주의(utility)로 나누고 있다.

Greenberg 와 Ruback(1982)은 범죄자 처벌의 목적으로 7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이 처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가 있다. 두 번째로는, 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통해 그 범죄자가 처벌이 무서워 미래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특별억제(individual deterrence)가 있다. 세 번째로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감시킴으로써 더 이상 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그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무력화(incapacitation)가 있다. 네 번째로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죄의 크기만큼)범죄자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당연한,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그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보(retribution)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결과로 느낀 좌절감이나 상처, 분노 등으로부터 카타르시스와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도덕적 분개(moral outrage)가 있다. 여섯 번째로는,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등을 바꾸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범죄자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회복귀(rehabilitation)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큼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등 피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회복 restitution)이 있다.

Kaplan(1996: Wrightsman, Greene, Nietzel, & Fortune, 2002에서 재인용)은 위의 7가지 처벌 목적 중 응보와 도덕적 분개는 응보적인 측면의 처벌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일반억제, 특별억제, 무력화, 사회복귀, 회복은 공리주의적인 측면의 처벌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처벌철학들 중 어떤 처벌철학들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판단자들이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그 처벌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재홍, 1995a; 최훈석, 박은영, 2008; 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Carroll et al., 1987; Darley et al., 2000; McFatter, 1978, 1982; Reyna & Weiner, 2001; Weiner et al., 1997). 이러한 연구들 중 대표적인 연구들 몇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Fatter(1982)는 대학생들과 지법판사들에게 처

벌의 목적을 무력화, 응보, 사회복귀, 일반억제, 특별억제, 그리고 아무런 처벌철학에도 따르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폭행, 차 절도, 강간, 살인 범죄를 대상으로, 처벌크기를 증가시키며 각 처벌크기가 각 처벌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무력화, 일반억제, 특별억제 철학에 입각하여 판단하도록 했을 때는 각 범죄자에 대한 처벌(벌금액수, 보호관찰 기간, 수감 기간 각각에 대해서)이 커질수록 각 처벌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보와 사회복귀 철학에 입각하여 판단하도록 했을 때는, 아무런 처벌철학에도 따르지 않도록 했을 때와 유사하게 처벌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각 처벌철학의 유용성 정도가 뒤집어진 'U' 자 형태(즉, '∩' 형태)로 나타났다. 이 중 아무런 처벌철학에도 따르지 않도록 한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는 응보철학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과 판사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적절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처벌철학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은 살인에서는 사회복귀철학이, 나머지 범죄에서는 응보철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사들은 모든 범죄에서 응보철학이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Darley, Carlsmith, 그리고 Robinson(2000)은 무력화와 응보를 처벌 기준으로 설정하고, 중도독질, 중한 절도, 폭행, 고의적 살인, 암살사건을 대상으로 범죄의 심각성 수준과 재범가능성 수준을 조작해, 이에 대한 양형을 판단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아무런 처벌철학에도 따르지 않고 처벌의 강도를 판단하도록 했을 때, 처벌의 강도는 무력화 철학의 관련 요소로 설정한 재범가능성 정도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응보철학의 관련 요소로 설정한 범죄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범죄의 심각성 수준은 도덕적 분개수준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이 지각된 도덕적 분개수준은 처벌의 강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더해, 응보 철학과 무력화 철학에 따라 판단한 결과와 아무런 철학에도 따르지 않고 판단한 결과를 살펴봐왔는데, 아무런 처벌철학도 제시 받지 않고 판단한

결과는 응보철학에 따라 판단한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응보철학이 무력화 철학보다 처벌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철학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고재홍(1995a, 연구4)은 응보관련요소로 가정한 죄크기와, 사회복귀와 억제(일반억제와 특별억제를 통합)관련요소로 가정한 재범가능성을 조작해 단순 절도, 단순폭행, 금전사기, 상습절도, 원한살인, 음주사고, 무장강도, 특수강간으로 범죄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종속측정치로는 사회복귀, 응보, 억제기준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을 선택하여, 참가자들이 범죄자를 처벌할 때 각 항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겠는지 그 정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전체범죄를 합했을 때, 억제기준과 응보기준을 사회복귀 기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크기와 재범가능성 크기에 따른 범죄유형과 처벌기준의 중요도를 살펴봤을 때, 재범가능성의 크기가 큰 범죄는 억제기준의 중요도가 컸고, 죄크기가 큰 범죄는 응보기준의 중요도가 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참가자들이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사회복귀 기준보다 응보나 억제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할 때의 처벌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연구들은 형벌의 목적 이론에 근거하여 주로 응보, 일반억제, 특별억제, 사회복귀, 무력화 같은 처벌철학들이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아본 연구들이었다. 하지만, McFatter(1982)와 고재홍(1995a, 연구4)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어떤 특정 처벌철학이 모든 범죄유형에 있어 일관되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범죄유형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이 다르고 이에 따라 양형도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각 범죄별로 처벌철학이 다르고, 이에 따라 양형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연구 대상 범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전통적인 일반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혹 사기나 위조, 횡령 같은 범죄들을 다룬 연구들도 있었지만, 이들 범죄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신분, 지위를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를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범죄시나리오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화이트칼라 범죄자 즉,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범죄자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상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 중 직업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범죄자의 신분도 고위간부이상으로 초점을 맞추어 기업고위간부의 사기, 횡령과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와 같은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적으로 그 비교대상군이 되는 절도와 강도 같은 일반범죄를 본 연구의 범죄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범죄들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범죄 각각에 대한 양형 판단을 비교 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 3년 이상의 법정형에 맞도록 설정된 사기, 횡령과 강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들 간의 차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보려 하였다. 또한, 기존에 주로 다루어졌던 응보, 일반억제, 특별억제, 무력화, 사회복귀 철학에 더해, Greenburg와 Ruback(1982)이 제안한 도덕적 분개, 회복철학을 추가하여 각각의 범죄별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연구 1

방 법

참가자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수도권 소재 K 대학교에서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157명(남자 61명,

여자 96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18세에서 34세까지로 평균(SD) 21.56(2.54)세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실험점수를 일부 인정해 주었다.

설문내용

범죄 시나리오

사기, 횡령, 뇌물수수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강도, 절도와 같은 일반범죄에 대한 범죄 시나리오는 대검찰청(2007)의 범죄분석을 참고하여 작성·제시하였다. 각 범죄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횡령: 건설업체 고위 간부인 40대의 000은 업무상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자금 약 5억 1천만원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건설업체의 고위 간부인 40대의 000은 아파트 분양권을 먼저 넘겨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5억 1천만원을 사기하여 가로챘다.

뇌물: 도청에서 건축 관련 허가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축과 과장(4급)인 40대의 000은 공사업자로부터 건축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로 현금 3천만원을 받고, 이 공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절도: 아무런 직업도 없는 40대의 000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뒤져 현금과 폐물 등 약 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강도: 아무런 직업도 없는 40대의 000은 밤 늦게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과 폐물 등 약 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범죄의 처벌철학에 대한 판단

일반억제, 특별억제, 무력화, 응보, 도덕적 분개, 사회복귀, 회복 철학에 대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에 있어서, 당신이 각각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라는 지시문을 읽어준

후, 각 처벌 철학에 대한 기술문을 읽어주고 이와 같은 철학에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⑨ 매우 동의한다’의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처벌 철학에 대한 기술문은 다음과 같다.

일반억제: 위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데 있다.

특별억제: 위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범죄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이 범죄자에게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또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데 있다.

무력화: 위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이러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로부터 격리 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응보: 위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만큼(죄의 크기만큼) 범죄자에게 그에 맞는 벌을 받게 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데 있다.

도덕적 분개: 위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처벌을 통해 범죄의 피해(직·간접적 피해 모두 포함)로 인해 느꼈을 피해자의 상실감이나 분노 등을 해소시켜 주는 데 있다.

사회복귀: 위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데 있다.

회복: 위와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등 피해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당신이라면 어느 정도의 징역형(형량)을 내리시겠습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제외하고, 0년에서 30년까지의 범위에서, 반드시, 년 단위로 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응답하게 하였다.

절차

자료수집은 교양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을 알아보는 연구’라고 소개하고, 성별과 나이에 응답하게 한 후, 5가지 범죄에 대한 간단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읽어주며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각 처벌철학과 양형판단에 관한 질문에 하나씩 응답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자료수집을 마쳤다.

결과 및 논의

연구 1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양형판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 중 사기, 횡령과 일반 범죄 중 강도 간의 양형판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연구 1의 두 번째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 범죄에 대한 양형판단에 있어서 각 처벌 철학들에 대한 판단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 범죄를 비교 분석한 것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을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각 범죄유형 간 양형 판단에서의 차이

먼저, 각 범죄별로 양형판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각 범죄별 양형판단 정도의 평균

그림 1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사기범죄에는 평균 (SD) 9.65(6.63)년 횡령범죄에는 8.98(6.49)년, 뇌물범죄에는 6.75(5.88)년, 강도범죄에는 6.55(5.16)년, 절도범죄에는 3.68(3.60)년의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F(4, 624) = 57.40, p < .001$. 각 범죄별 형량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뇌물죄와 강도죄 간 형량판단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여타 범죄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s < .05$.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사기 > 횡령 > 뇌물 = 강도 > 절도.

본 연구의 범죄 시나리오에 반영된 범정형 상으로는 뇌물수수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장 크고, 사기, 횡령, 강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절도가 6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작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일반인들이 절도죄에 여타 범죄들보다 가장 낮은 양형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범정형이 더 큰 뇌물수수죄보다 사기죄와 횡령죄에 더 중형을 내렸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기업고위간부의 사기나 횡령이 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범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같게 설정된 사기, 횡령, 강도 간의 차이, 즉, 사기와 횡령에 강도보다 더 큰 형량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입법자들이 이들 범죄 유형의 중대성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반인들은 일반 강도죄보다 화이트칼라 계층의 사기, 횡령죄를 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더 많

은 양형을 부과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범죄별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들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 범죄 각각의 범죄별로, 양형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예측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인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설명력을 갖는 변인들을 찾아내는 단계적선택법을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각 범죄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SE	t 값
화이트칼라범죄				
사기	무력화	.20	.27	2.55*
횡령	무력화	.22	.23	2.93**
뇌물수수	응보	.30	.21	4.05***
일반범죄				
강도	무력화	.21	.24	2.65**
절도	응보	.26	.15	3.38**

* $p < .05$. ** $p < .01$. *** $p < .001$.

각 범죄별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범죄에서 각각 단 하나의 변인들만이 예측모형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변인들은 예측모형의 설명력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아 모두 제거되었다. 이상의 결과 중, 먼저 화이트칼라 범죄를 보면, 사기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양형을 부과함에 있어서 7가지 처벌철학 중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력화 철학으로 나타났다, $R^2 = .04, F(1, 154) = 6.51, p = .012$. 횡령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양형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인은 무력화 철학이었다, $R^2 = .05, F(1, 155) = 8.60, p = .004$. 이는 기업고위간부의 사기나 횡령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처벌의 목적보다도 이러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 할수록 양형을 더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7가지 처벌철학 중 양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응보철학으로 나타났다, $R^2 = .09$, $F(1, 155) = 16.40$, $p < .001$.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뇌물수수죄를 범한 고위 공무원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그가 저지른 죄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책임을 상쇄해야 한다고 판단할수록 더 많은 양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절도와 강도 같은 일반범죄를 살펴보면, 강도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양형을 부과할 때는 처벌철학 중 무력화 철학이, 절도죄를 범한 범죄자에게는 응보철학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강도: $R^2 = .04$, $F(1, 154) = 7.07$, $p = .009$; 절도: $R^2 = .07$, $F(1, 153) = 11.47$, $p = .001$. 즉, 강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사기, 횡령죄를 범한 기업고위간부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둠으로서 재범을 막고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양형이 더 부과되었고,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서도 뇌물수수죄를 범한 고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죄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죄의 책임을 상쇄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양형을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구 2

연구 1에서는 일반인들이 화이트칼라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 무력화나 응보 철학과 같은 엄격한 처벌 철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범죄보다 더 엄중한 양형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범죄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범죄의 종류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 2에서는 횡령범죄를 대상으로 여타의 변수들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만을 조작하여 연구 1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방 법

참가자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수도권 소재 K 대학교에서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99명(남자 53명, 여자 46명)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 시나리오 집단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 시나리오 집단에 각각 무선할당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18세에서 41세까지로 평균(SD) 20.84(2.84)세이었다. 두 집단 간 나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96) = 1.79$, $p = .07$.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실험점수를 일부 인정해 주었다.

설문내용

범죄 시나리오

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여타의 모든 상황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게 설정된 중견공무원 범죄자와 사회적 지위가 낮게 설정된 성인오락실사장 범죄자가 횡령범죄를 저지른 시나리오를 대검찰청(2007)의 범죄분석을 참고하여 작성·제시하였다. 각 범죄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횡령(사회적 지위 고): 매 달 평균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중견 공무원인 50대의 000은 동업자 모르게 동업자금 약 1천만원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횡령(사회적 지위 저): 매 달 평균 5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50대의 000은 동업자 모르게 동업자금 약 1천만원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의 처벌철학에 대한 판단

일반억제, 특별억제, 무력화, 응보, 도덕적 분개, 사회복귀, 회복 철학에 대한 판단은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당신이라면 어느 정도의 징역형(형량)을 내리시겠습니까? 단, 최저 1개월부터 최고 1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응답하게 하였다.

절차

자료수집은 교양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을 알아보는 연구’라고 소개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 시나리오 집단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 시나리오 집단에 무선할당하였다. 성별과 나이에 응답하게 하고 각 범죄에 대한 간단한 시나리오를 읽게 한 후,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각 처벌철학과 양형 판단에 관한 질문에 하나씩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난 후 각 조작점검 문항들(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법 앞의 평등 의식)에 응답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자료수집을 마쳤다.

결과 및 논의

조작점검

사회적 지위의 조작은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명성, 존경 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점검했다. 또한, 경제적 지위의 조작은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죄자의 경제적 지위(경제력)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법 앞의 평등의식의 조작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도를 물어 점검했다. 모든 조작점검 문항은 9점척도(1 = 매우 낮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9 = 매우 높다;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의 응답을 *t*-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위의 조작과, 경제적 지위, 법 앞의 평등의식의 통제는 모두

성공적이었다. 즉, ‘사회적 지위 고’ 집단(M = 6.10, SD = 1.65)은 ‘사회적 지위 저’ 집단(M = 4.22, SD = 1.85)보다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지각했다, $t(97) = 5.31, p < .001$.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응답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97) = 1.84, p = .06$. 법 앞의 평등의식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t(97) = -.13, p = .89$, 두 집단의 평균(SD)이 9점 만점에 7.37(2.43)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이 내리는 처벌크기의 판단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편향되지 않고, 상당히 공정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 고·저 집단 간 양형판단에서의 차이

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여타의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위를 조작한 각 집단 간 양형판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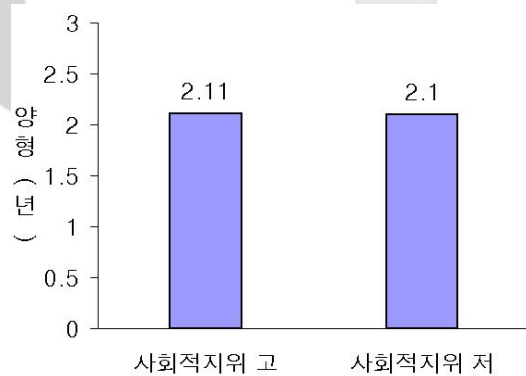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지위 고·저 집단별 양형판단 정도의 평균

사회적 지위 고 집단(M = 2.11, SD = 1.36)과 저 집단(M = 2.10, SD = 1.94) 간 양형판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97) = -.143, p = .886$. 이와 같은 결과는 횡령범죄의 양형판단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은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일반인들은 본 시나리오 상의 횡령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편향되지 않

고, 범죄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당히 공정하게 양형을 판단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 2에서의 시나리오 상 횡령액수는 1천만원으로, 연구 1의 횡령액수인 5억 1천만원보다 상당히 작은 것이었다. 이는 법정형상의 차이로 반영되는데, 연구 1에서 설정한 횡령범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고 연구 2의 횡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비교적 경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연구 1에서의 횡령범죄자에게 부과한 8.98년의 형량에 비해 연구 2에서의 횡령범죄자에게 부과한 형량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양형판단이 비교적 형평성에 맞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위 고·저 집단별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들

횡령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의 고·저 집단별로, 양형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사회적 지위 고·저 집단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에 대한 회귀분석

횡령	독립변수	β	SE	t 값
사회적지위 고	무력화	.32	.08	2.37*
사회적지위 저	무력화	.32	.12	2.36*

* $p < .05$.

각 집단별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각각 단 하나의 변인들만이 예측모형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변인들은 예측모형의 설명력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아 모두 제거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게 양형을 부과함에 있어서 7가지 처벌철학 중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력화 철학이었다, $R^2 = .10$, $F(1, 48) = 5.65$, $p = .021$. 사회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양형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인은 무력화 철학이었다, $R^2 = .10$, $F(1, 47) = 5.60$, $p = .022$.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본 연구에서와 같은 횡령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처벌의 목적보다도 이러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감옥에 가두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 할수록 양형을 더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가 범죄자의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종합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 범죄에 비해 그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며, 사회적으로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질서 조성에도 그 해가 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비일관적이고 관대한 선고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법원의 선고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양형기준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 중 직업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범죄자의 신분도 고위간부 이상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고위간부의 사기, 횡령과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화이트칼라 범죄의 범위를 한정된 것은 Sutherland(1940, 1983)가 지적한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직업상의 신분과 지위를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일반범죄에 비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그 피해의 범위도 광범위한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적으로 그 비교대상군이 되는 절도와 강도 같은 일반범죄를 선정하였다(참고, 경제개혁연대, 2007b, 양형위원회, 2007). 이렇게 선정된 이들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 범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양형판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양형판단에서 처벌보고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고재홍, 1995a; 최훈석, 박은영, 2008; 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Carroll et al., 1987; Darley et al., 2000; McFatter, 1978, 1982; Reyna & Weiner, 2001; Weiner et al., 1997)에 근거하여 화이트칼라범죄와 일반범죄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처벌철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기, 횡령, 뇌물수수과 같은 화이트칼라범죄와 절도, 강도와 같은 일반범죄 간에 일반인들의 양형판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같게 설정된 사기, 횡령, 강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특경가법상의 사기와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도범죄보다 더 큰 형량을 부과하였다.

이는 법원의 선고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데, 즉,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실태를 조사한 문헌들(경제개혁연대, 2007a; 손철우, 2007; 양형위원회, 2007; 오영근, 이상용, 1996; 이승준, 2006; 장홍근, 1992; 참여연대, 2006; 최인섭, 최영신, 1996)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의 법정형에 못 미치는 양형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은 강도범죄에 비해 사기와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더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이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2의 결과는 위와 같은 결과가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비슷한 범죄엔 비슷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동의한 연구 2의 결과를 위의 결과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과거보다 일관성 있고 엄격하게,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처벌을 내리기를 바라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나타

내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했듯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철학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기본적 지침으로 작용한다 즉, 어떤 처벌 철학에 입각하여 양형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경중의 기본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범죄자 처벌에 대한 철학들 중 어떤 철학이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범죄의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무력화 철학이, 횡령죄나 강도죄의 경우에도 역시 무력화 철학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뇌물수수죄의 경우와 절도죄의 경우에는 응보철학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개혁연대(2007b)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법원은 양형 선고의 이유에 있어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다거나, 그 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이유 등과 같은 회복철학에 입각하여 이들 범죄자에 대해 징벌적 효과가 거의 없는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선고를 많이 내리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일반인들은 이들 범죄자들에게 일반범죄의 강도죄와 같은 무력화 철학이나 절도죄와 같은 응보 철학에 입각하여 이들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죄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소한 기업고위간부의 사기나 횡령,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회복철학이 아닌 무력화 철학이나 응보 철학에 입각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연구 2에서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횡령범죄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연구 1에서와 동일하게 무력화 철학이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범죄자의 신분상의 차이를 통제하지 못한 연구 1의 결과의 잠재적 오염가능성을 일정부분 상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있어 기초적 자료로

서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McFatter(1982)나 고재홍(1995a)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각각의 범죄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여러 범죄에 있어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처벌철학을 탐색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범죄에 있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들을 개별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보다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2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가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어, 연구 1의 결과가 범죄자의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일정부분 상쇄되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범죄의 종류, 범죄의 이득액을 동일하게 하여 완벽한 반복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범죄자의 신분상의 차이를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만 조작한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화이트칼라 범죄를 대상으로, 연구 1과 같이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이득액을 설정하고,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의 조작도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범죄의 이득액이 큰 경우에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에 따른 일반인들의 처벌판단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를 범죄자 기준으로 볼 것인지, 범죄유형으로 볼 것인지도 보다 명확히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범죄의 양형판단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각 처벌철학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였다. 이는 처벌철학을 단편적으로 몰음으로써 피험자들이 각 처벌철학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에 추후연구는 각 처벌철학과 관련한 구체적 요인들을 연구에 반영하여 각각의 처벌철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철학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범죄 중 범죄동기의 구

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사건만을 다루었다. 이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대표하는 연구라고 할 수 없고, 오직 기업장면에서 고위간부직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기, 횡령 그리고 공공부문 장면에서 고위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지는 뇌물수수에만 적용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결과들을 확장하여 반복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범죄나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형이란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형의 종류와 형량의 결정,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형의 선고 유예와 집행유예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컫는다(최석운,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형판단을 형량판단으로만 하게 한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벌금형, 보호관찰형, 유기징역형, 무기징역형, 사형 등과 같이 형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판단하게 하고 이러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을 조작한다면, 이는 보다 현실의 양형과정과 유사한 연구로서 이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보다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범죄자를 처벌하는 철학은 양형의 종류와 경중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틀로써 기본적 지침으로 작용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양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간단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원행정처(1999)나 양형위원회(2007)에서 형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지적한 것들, 즉, 범죄의 계획성이나 피해의 중함, 범행동기, 범행수법, 재범가능성, 전과횟수, 생활태도, 합의여부, 피해자의 의견, 반성정도 등 여러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했고, 따라서 같은 처벌철학 판단들을 공유하는 범죄 사이에 양형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각 요인들이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양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연구를 측

진사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제개혁연대(2007a).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2007-8). 서울: 경제개혁연대.
- 경제개혁연대(2007b).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판결의 양형 사유 분석(경제개혁리포트 2007-9). 서울: 경제개혁연대.
- 경제개혁연대(2007c).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기업지배구조연구, 25, 18-24.
- 고재홍(1991). 잘못, 책임 및 처벌: 처벌판단에 관한 한 가상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21.
- 고재홍(1995a). 처벌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고재홍(1995b). 처벌크기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2), 29-50.
- 김성규(1993).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공무원범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범준(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57-73.
- 김범준, 최승혁(2008). 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43-361.
- 대검찰청(2007).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문성식(2003).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성우(2007, 5, 25). 비슷한 범죄엔 비슷한 처벌... '법 앞의 평등' 구현. 국정브리핑.
- 박은영(2007). 범죄자 처벌의 심성모형이 형량판단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법원행정처(1999). 양형실무. 서울: 법원행정처.
- 손철우(2007). 우리나라 양형 현황에 관한 기초보고서. 서울: 대법원 양형위원회.
- 손철우(2008). 형벌의 목적과 양형기준의 목적. 서울: 대법원 양형위원회.
- 신진영(2007). 화이트칼라 범죄와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연구, 25, 9-17.
- 양형위원회(2007). 2007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대법원 양형위원회.
- 오영근, 이상용(1996). 뇌물죄에 관한 연구 - 수뢰죄의 양형실태와 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택림(2006). 미국 White Collar Crime에 관한 연구. 부산: 부산지방검찰청.
- 이승준(2006).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법학연구, 16(3), 101-124.
- 이재상(1994). 형벌목적과 양형. 형사정책연구소식, 26, 2-4.
- 이주형(2007).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 서울: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이천현(2002).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천현(2007). 형벌의 본질과 목적 -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서울: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이철(2005).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개념적 접근: "비유효 범죄" 영역의 개념 연구. 형사정책연구, 16(3), 331-374.
- 이태원(1998).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에 관한 최근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9(1), 103-135.
- 장홍근(1993).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과 대응방안.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 참여연대(2006).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06-07-03). 서울: 참여연대.
- 최석윤(1995).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30, 37-44.
- 최영인, 엄건령(2005).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원인이론. 서울: 백산출판사.
- 최인섭, 최영신(1996).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연구 -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한수(2007).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위한 과제. 기업지배구조연구, 25, 2-8.
- 최훈석, 박은영(2008).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목

- 적에 따른 처벌 판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75-195.
- 황인정(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Carlsmith, K. M. (2006). The roles of retribution and utility in determining punish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437-451.
- Carlsmith, K. M., Darley, J. M., & Robinson, P. H. (2002). Why do we punish? Deterrence and just deserts as motives for punis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284-299.
- Carroll, J. S., Perkowitz, W. T., Lurigio, A. J., & Weaver, F. M. (1987). Sentencing goals, causal attribution, ideology,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7-118.
- Darley, J. M., Carlsmith, K. M., & Robinson, P. H. (2000). Incapacitation and just deserts as motives for punishment. *Law and Human Behavior, 24*(6), 659-683.
- Greenberg, M. S., & Ruback, R. B. (1982). *Social psycholog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 Brooks/Cole.
- McFatter, R. M. (1978). Sentencing strategies and justice: Effects of punishment philosophy on sentencing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12), 1490-1500.
- McFatter, R. M. (1982). Purposes of punishment: Effects of utilities of criminal sanctions on perceived appropriat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3), 255-267.
- Reyna, C., & Weiner, B. (2001). Justice and utility in the classroom: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the goals of teacher's punish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309-319.
- Streng, F. (1994).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Straftheoretische Grundlagen der Strafzumessung*]. (정현미 역). 형사정책연구, 5(4), 5-25.
- Sutherland, E. H. (1940).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1-12.
- Sutherland, E. H. (1945). Is "white collar crime"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0*(2), 132-139.
- Sutherland, E. H. (1983). *White collar crime: The uncut version*. CT: Yale University Press.
- Weiner, B., Graham, S., & Reyna, C. (1997). An attributional examination of retributive versus utilitarian philosophies of punishment. *Social Justice Research, 10*, 431-452.
- Wrightsmann, L. S., Greene, E., Nietzel, M. T., & Fortune, W. H. (2002). *Psychology and the legal system (5th)*. CA: Wadsworth.

Punitive Philosophy and Sentence Judgement on White-Collar Crime

Seung-Hyuk Choi
Korea University

Beom-Jun Kim Si-Up Kim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ublic sentence judgement and punitive philosophy on the white-collar crimes. Study 1, 157 students made sentence and judged punitive philosophy on fraud, embezzlement, bribery, robbery, and theft. The fraud, embezzlement, and robbery assigns 3 or more years sentence on the existing criminal law.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hite-collar crimes(fraud, embezzlement) were sentenced longer than the general crimes(robbery). The fraud, embezzlement, and robbery were sentenced based on the incapacitation philosophy. The bribery and theft were sentenced based on the retribution philosophy. Study 2 examined whether the results of study 1 was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social status of offenders. 99 students made sentence and punitive philosophy judgments on embezzl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social status (high and low) were not different at sentence judgement, and that both conditions were sentenced based on the incapacitation philosophy as study 1. The results imply that the general public judged more strictly than the legislator and the court did on the white collar crimes. It implies that people perceived the white collar crimes more seriously than the general crimes regardless of the offender's social status. Implication of the findings for the sentencing guideline preparation are discussed.

Keywords : white-collar crime, punitive philosophy, sentence judgement, sentencing guideline, social status.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월 7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8월 7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8월 10일